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2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금)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가족돌봄 공백 해소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¹⁾」 및 「돌봄 SOS센터 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를 1,145명에서 1,167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119명 → 1,141명 (증 22)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계: 1,145명 → 1,167명 (증 22)
 - 일 반 직 계: 1,141명 → 1,163명 (증 22)
 - 6급 이하 계: 1,078명 → 1,100명 (증 22)

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란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는 소지역 단위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

나. 입법예고 : 2020. 10. 16. ~ 2020. 11. 5. (별도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가족돌봄 공백 해소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국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11. 13.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본문 정원의 총수를 1,145명에서 1,167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119명 → 1,141명 (증 22), 조례 제2조제1호
- 조례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1,145명 → 1,167명 (증 22)
 - 일반 직 계: 1,141명 → 1,163명 (증 22)
 - 6급 이하 계: 1,078명 → 1,100명 (증 22)

표2 개정 전·후 정원 비교

현 행					구 분	개 정 안					
총 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총 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증감
1,145	1,145				총 계	1,167	1,167				증22
1	1				정 무 직	1	1				
1,141	1,141				일반직 계	1,163	1,163				증22
1	1				3급	1	1				
8	6	1	1		4급	8	6	1	1		
52	32	2	8	10	5급	52	32	2	8	10	
1,078	1,078				6급 이하 계	1,100	1,100				증22
2	2				전문경력관 계	2	2				
3	3				별정직 계	3	3				

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현장 복지인력 증원 내역

【 (행안부) 「읍면동 현장 복지인력 충원계획」 개요 】

- 문재인 정부 ‘일자리로드맵’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하 주공사업) 계획’에 기초한 현장 복지인력 충원 필요
- 최근 현장복지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주공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별 적정 인력충원 방향 제시

【 행안부 충원기준 및 우리구 충원 필요인원 】

구 분	내 용	(행안부) 충원기준인원	(금천구) 충원필요인원
합 계		40명	22명
시군구청	시군구별 2명	2명	-
읍면동복지	조정된 적정 복지인력 기준, 면 지역은 기본형에 따라 충원	12명	11명
읍면동자치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별 1명	10명	-
읍면동간호	일정규모 이상 읍동별 2명	16명	11명

※ 2020년 기준인건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33명(2018년 하반기 수시배정 인력) 인건비 기 포함, 이중 22명만 충원 예정

※ 충원인력(22명)은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병행 추진 인력임

※ 동 및 복지정책과 담당 인력 역할

구) - 사업 총괄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동 복지인력) -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복지.주거. 일자리 등 전문 종합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및 주민복지교육 지원

동 간호인력) - 보건,건강관련 상담 및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 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라. 정원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원 2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관계는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예산,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5쪽 표2를, 정원 22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보고서 16쪽 참고

표2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집행현황

○ 2014년 ~ 2019년까지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편성액과 집행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①)	예산편성액 (②)	인건비 집행액 (③)	비 고 (①-②)
2014년	85,476	83,947	75,817	1,529
2015년	89,904	85,889	80,113	4,015
2016년	91,488	87,670	83,808	3,818
2017년	97,198	91,886	88,486	5,312
2018년	99,124	96,337	91,713	2,787
2019년	104,405	103,485	95,488	920
2020.10월	108,789	106,951	83,238	1,838

연도별 기준인건비 추이 (2014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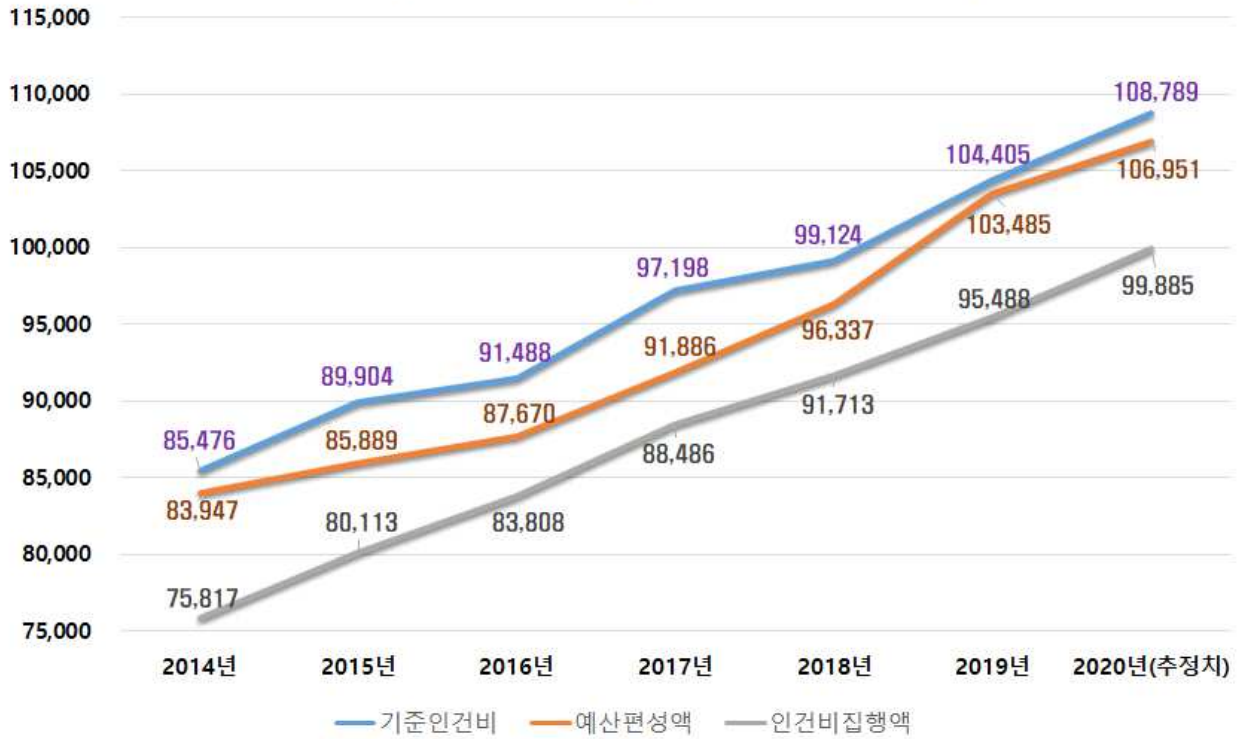


표3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

○ 비용추계 산정기준 : 증원인원 및 기준호봉

구분	호봉 기준	21년 기준액	증원
9급	1호봉	3,682천원/월	11명
8급	1호봉	3,778천원/월	11명

○ 비용추계 결과(보고서 12쪽 행정지원과 비용추계서 내용 정리)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인건비	984	1,008	1,032	1,057	1,082	5,165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22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6쪽 표3과 같이 1차 년도에 9억 8,400만원, 2차 년도에

10억 800만원, 3차 년도에 10억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구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보고서 5쪽 표2와 같이 1,087억 8,900만원이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69억 5,100만원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약 18억 3,800만원의 여유가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832억 3,800만원임.

정원을 22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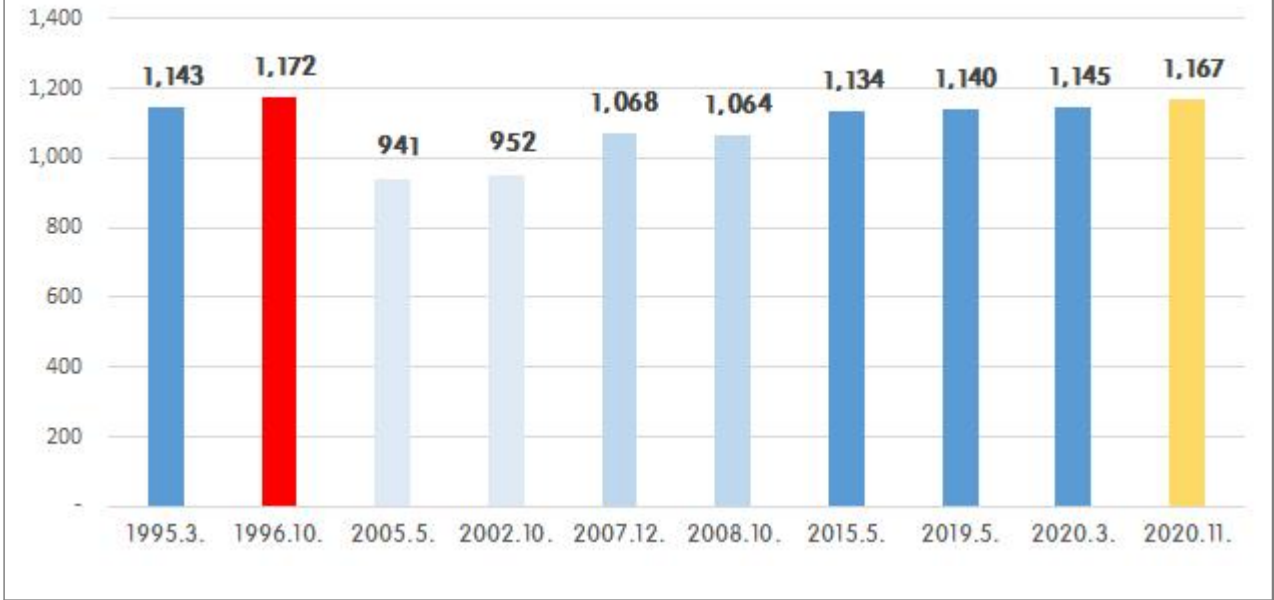
마. 그동안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1995. 3월 금천구 개청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구 분	총정원	비 고	구 분	총정원	비 고
1995. 3월	1,143명	금천구 개청	1995. 4월	1,163명	
1995. 6월	1,164명		1996.10월	1,172명	
1998. 9월	1,012명	IMF 정원감축	1999. 1월	990명	
1999.10월	931명	IMF 정원감축	1999.12월	938명	
2000. 5월	941명	IMF 정원감축	2001. 2월	942명	
2001. 7월	946명		2002. 4월	951명	
2002.10월	952명		2003. 3월	953명	
2007.12월	1,068명		2008.10월	1,064명	
2015. 5월	1,134명	찾동 실시로 사회복지직 등 증원	2018.12월	1,134명	
2019. 5월	1,140명	개인지방소득세, 지하안전관리 등 증원	2020. 3월	1,145명	아동학대, 미세먼지, 주민참여예산 등 증원(5)
2020.11월	1,167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돌봄 SOS센터 사업(22)			

○ 주요 정원 증감 현황 (단위 : 명)



1995. 3월 금천구 개청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증원 증감 현황은 위 표4와 같음. 개청 당시 1,143명, 1995년 6월에는 1,164명에서 IMF 시 941명 까지 축소되었고, 2015년 5월 찾동 실시로 사회복지직 70명 증원으로 1,134명이 되었고 2019년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하안전관리 업무 등이 강화되면서 6명이 증원되었고 2020년 3월에 아동학대, 미세 먼지,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5명 증원되었으며, 금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가족돌봄 공백 해소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국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 인력 22명이 확보되어 1,167명임.

라. 검토결과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원을 22명을 증원하려는 이유가 있고, 정원을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가족돌봄 공백 해소 및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인력을 확보하고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의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참고사항 1]

자치구별 정원 현황

(기준 : 2020. 7. 31 / 단위 : 명, 백만원, km², %, 개)

연번	자치구	인 구		공무원		예 산		면 적		행정동	
		인구(명)	순위	정원	순위	2020년 (백만원)	순위	면적(km ²)	순위	동수	순위
평균		388,617명		1,429명		700,133백만원		24.21_{km²}		17동	
1	송 파 구	671,589	1	1,686	2	903,616	4	33.87	5	27	1
2	강 서 구	586,279	2	1,675	3	1,010,044	2	41.44	2	20	4
3	강 남 구	540,636	3	1,723	1	1,016,205	1	39.5	3	22	2
4	노 원 구	527,981	4	1,609	4	971,638	3	35.44	4	19	6
5	관 악 구	499,729	5	1,504	7	765,640	6	29.57	7	21	3
6	은 평 구	481,184	6	1,452	9	839,000	5	29.71	6	16	13
7	양 천 구	457,543	7	1,398	14	701,235	10	17.41	19	18	7
8	강 등 구	457,339	8	1,431	12	709,727	9	24.59	8	18	7
9	성 북 구	441,188	9	1,515	6	748,830	8	24.57	9	20	4
10	서 초 구	428,252	10	1,570	5	698,729	12	46.98	1	18	7
11	구 로 구	405,260	11	1,413	13	699,235	11	20.12	16	15	17
12	동 작 구	394,905	12	1,334	19	641,336	17	16.35	22	15	17
13	중 랑 구	394,293	13	1,435	11	753,846	7	18.5	17	16	13
14	영등포구	374,097	14	1,473	8	659,711	15	24.55	10	18	7
15	마 포 구	374,036	15	1,448	10	685,830	14	23.85	12	16	13
16	광 진 구	349,258	16	1,389	15	559,615	20	17.06	20	15	17
17	동대문구	345,156	17	1,366	17	643,372	16	14.22	23	14	21
18	도 봉 구	328,822	18	1,312	21	625,146	18	20.66	15	14	21
19	서대문구	312,264	19	1,368	16	606,619	19	17.63	18	14	21
20	강 북 구	311,198	20	1,347	18	692,606	13	23.6	13	13	24
21	성 동 구	296,896	21	1,326	20	557,441	21	16.86	21	17	11
22	금 천 구	231,939	22	1,145	25	527,952	22	13.02	24	10	25
23	용 산 구	229,432	23	1,296	22	510,358	23	21.87	14	16	13
24	종 로 구	150,183	24	1,262	23	468,317	25	23.91	11	17	11
25	중 구	125,970	25	1,242	24	507,270	24	9.96	25	15	17

※ 자료출처 : 공무원 정원-서울시, 「인사관리시스템」,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예산-자치구별 홈페이지, 면적, 행정동수-서울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2**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67	1,167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1,163	1,163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1,100	1,100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145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167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u>1,119명</u>		1. ----- <u>1,141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 (제4조 관련)		[별표 3]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 (제4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사 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45</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45</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 무 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41</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41</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78</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078</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경력관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상당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45</u>	<u>1,145</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41</u>	<u>1,141</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078</u>	<u>1,078</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사 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67</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67</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 무 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63</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63</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00</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0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경력관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상당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67</u>	<u>1,167</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45</u>	<u>1,145</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41</u>	<u>1,141</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078</u>	<u>1,078</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67</u>	<u>1,167</u>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붙임3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별 비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름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책정기준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개정후비율	0.77%	4.46%	18.77%	29.22%	28.96%	17.31%	0.17%

- 인건비 기준액

구분	호봉 기준	21년 기준액	증원
9급	1호봉	3,682천원/월	11명
8급	1호봉	3,778천원/월	11명

※ ① 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수당,학비보조,출장비,연차수당,특수근무수당)+④복지포인트

- 임금인상율 : 연2.3%적용(최근 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인건비	519,750	519,750	519,750	519,750	519,750
소계(a)		519,750	519,750	519,750	519,750	519,750	2,598,750
세출	○인건비	984,720	1,008,353	1,032,554	1,057,335	1,082,711	5,165,673
	소계(b)	984,720	1,008,353	1,032,554	1,057,335	1,082,711	5,165,673
□총 비용(a-b)		-464,970	-488,603	-512,804	-537,585	-562,961	-2,566,92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519,750	519,750	519,750	519,750	519,750	2,598,750
구비	자체재원	464,970	488,603	512,804	537,585	562,961	2,566,923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984,720	1,008,353	1,032,554	1,057,335	1,082,711	5,165,673

5.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수애 (2627-1012)